



제 안 설 명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조백섭 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군파크골프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고령군민체육관 사용료는 주산체육관 사용료의 120% 수준으로 책정하여, 군민체육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군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파크골프장의 현장 상황에 맞는 이용료 감면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군민혜택의 적용 기준을 고령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강화하여 연회원 가입 시 혜택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외 이용자의 일일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상가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조항 신설에 따라 공유 재산을 지방체육회에 무상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가족행복과장 조 백 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가족행복과장)
제출 연월일	2024. 9.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파크골프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고령군민체육관 사용료 신설(별표)

나. 파크골프장 운영개선

1) 파크골프장 별도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12조)

2) 군민혜택 적용기준 강화 및 이용편의 증진(별표)

3) 고령군민 외 이용자 고령사랑상품권페이백 제도 운영(별표)

다.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무상대부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 체육 진흥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8. 28. ~ 9. 18.(22일간) / 의견제출 사항 반영

1) 파크골프장 일일이용료 인상 취소

2) 파크골프장 고령군민 외 이용자 이용료 고령사랑상품권페이백 제도 운영

3) 파크골프장 연간회원 재입장 시 일일이용료 납부 취소

4) 관외지역 이용자 숙박영수증 제출시 이용료 면제

다. 예산관련사항 : 페이백제도 운영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 예산 편성필요(비용추계서 별첨)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분석 결과 : 해당 없음

바. 기타 관련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제16호로 한다.

1. “체육시설”이란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별지 제5호 서식]”을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용의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음주, 흡연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체육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군수가 허가한 날부터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회원제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4.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기타 활동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에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를 “군수”로, “의한다”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일만큼”을 “기간만큼”으로, “정지 시일”을 “정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전액을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3.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체육시설 대부 등) 군수는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등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단법인 고령군체육회에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0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등 여유공간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사항)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개인 이용료”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구분 (목적)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축구경기	축구장	주간	100,000	200,000	- 1면 기준
			야간	150,000	250,000	
	축구경기외	축구장	주간	100,000	200,000	
			야간	150,000	250,000	
		풋살장	주간 (고령군민 외)	15,000	20,000	
			야간 (고령군민 외)	20,000	25,000	
			고령군민 (주·야간)	무료	무료	
			족구장	주간 (고령군민 외)	5,000	
		족구장	야간 (고령군민 외)	7,500	10,000	
			고령군민 (주·야간)	무료	무료	
	배구장, 농구장	주간	무료	무료		
야구경기	야구장	주간	100,000	200,000		
사문진 생활체육공원	축구경기	축구장	주간	100,000	200,000	- 1면 기준
	축구경기외	축구장	주간	100,000	200,000	
		농구장	주간	무료	무료	
야구경기	야구장 (리틀야구장 규모)	주간	30,000	40,000		
고령군민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120,000	
			야간	84,000	168,000	
	체육경기 이외		주간	120,000	240,000	
			야간	180,000	300,000	
주산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체육경기 이외		주간	100,000	200,000	
			야간	150,000	250,000	

※ 비고 : ① 조기는 주간으로 본다.

(단, 고령군민체육관과 주산체육관은 야간으로 본다)

② 축구장 및 야구장의 사용은 1면당 1일 3시간으로 한다.

③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해당할 경우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야간 사용 시 사용료로 50,0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풋살장 및 족구장 사용은 1면당 1일 1시간으로 한다.

2. 개인 이용료

(단위 : 원)

이용 시설명	연간이용료	일일이용료		비 고
		고령군민	고령군민 외	
고령군 파크골프장 (대가야, 다산)	100,000	2,000	5,000	

[비고]

- 가. 고령군민이라 함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나. 연간이용료는 고령군민에게 적용되며 연중 가입시 월할 계산하여 당해연도 까지만 적용한다.
- 다. 연간회원증(카드)을 재발급하는 경우 3,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라. 연중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후, 고령군민이 아닐 경우 직권으로 연간회원을 취소하고 이용료의 반환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반환한다.
- 마. 이용료 감면(중복감면 불가)
-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군민 중 만75세 이상 전액 감면
 - 고령군민 중 만65세 이상 만74세 이하 50% 감면
 - 20인 이상의 단체 20% 감면
 - 관내 지역 숙박시설(모텔, 펜션, 민박 등) 이용자는 영수증(전일 또는 당일) 제출시 4인까지 사용료 전액 감면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사.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 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민 외'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자. 고령군파크골프장은 잔디관리를 위해 1년 중 2개월간 휴장한다.
- 차. 파크골프장 사용은 1일 3시간으로 한다.
- 카. 그 밖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용(변경) 계획	사용시설			
	경기(행사)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변경신청 사항	변경(취소) 사유		사용료 기 납부액	
	변경(취소) 내용		사용료 반환청구액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풋살장, 축구장 고령군민일 경우 무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및 가맹 경기단체,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사단법인 고령군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및 회원단체의 미영리 목적의 체육행사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일반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지역단체 및 가맹경기단체,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대회, 행사, 훈련 등에 따른 사고 또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보험가입, 의료인력 및 안전요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5.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으며, 위 조건 및 관련 조례를 위반 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서

신청인	성명 (단체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경기(행사)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사용기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지역단체 및 가맹경기단체,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대회, 행사, 훈련 등에 따른 사고 또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치(보험가입, 의료인력 및 안전요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으며, 위 조건 및 관련 조례를 위반 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수 (직인)

공공체육시설 이용 연간회원 가입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장소	[] 대가야파크골프장 [] 다산파크골프장		
	등록기간			
	연간이용료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번호 미기재, 주소변동사항(최근 3개월) 표시)
파크골프장 사용기준	1. 연간회원은 등록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1일 3시간이내” 이용가능합니다. 2. 입장시 회원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간회원권은 타인 양도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기간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4. 연간회원의 기준 확인을 위해 연중 주소 조회 후 직권으로 연간회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은 5번 항목의 본인 사정에 의한 이용료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본인 사정에 의한 이용료의 반환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반환합니다. 6.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및 3~4월 정기휴장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7.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및 가맹 경기, 회원단체 포함)가 주최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파크골프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파크골프장 관리자(근무자)의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연간회원 확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을</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 표시)</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청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p>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고령군청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고령군민 확인을 위한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③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p> <p>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위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 표시)</p> <p>※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간회원 신청이 불가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체육시설 사용료(이용료) 반환 청구서

신청인	성명 (단체 및 대표자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기납부액			반환청구액	
	반환사유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위 신청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고령군 생활체육공원(대가야읍 장기리 회천변).</u></p> <p style="margin-left: 20px;">나. <u>주산체육관(대가야읍 연조리).</u></p> <p style="margin-left: 20px;">다. <u>사문진 생활체육공원(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u></p> <p style="margin-left: 20px;">라. <u>삭제</u></p> <p style="margin-left: 20px;">마. <u>고령군 파크골프장(대가야읍 장기리 회천변,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u></p> <p>2. ~ 15. (생략)</p> <p>16. <u>“회원”이란 고령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u></p> <p>17. <u>“비회원”이란 고령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 1개월 미만 단위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18.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u></p>	<p>제2조(정의) ----- -----.</p> <p>1. <u>“체육시설”이란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u></p> <p>2. ~ 15.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삭 제></u></p> <p style="margin-left: 20px;"><u><삭 제></u></p> <p>16. (현행 제18호와 같음)</p> <p>제3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u></p>

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일반인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용의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및 사용 변경 허가를 -----

-----<후단 삭제>

④ -----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
-----.

⑤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① (생략)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연간회원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 음주, 흡연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체육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수가 허가한 날부터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의2(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

제11조의2(사용료의 수납) ①체육 시설의 사용료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생략)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회원제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관내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관내 초·중·고·대학교 선수단이 군대표로 참가하기 위한 훈련

5. 고령군체육회에 가맹·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행사 및 경기

<신 설>

6.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기타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령군파크골프장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군의

① 군수-----

----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전액을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2. -----

-- 기간만큼 -----
---- 정지기간-----
-----.

3.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이용·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연간이용권은 이용 개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 본인의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반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반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삭 제>

②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체육시설 대부 등) 군수는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등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제22조(준용규정) (생략)

<신설>

사단법인 고령군체육회에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0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등 여유공간을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파크골프장 고령군민 외 이용자 이용료 페이백 제도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고령군민 외 이용자 현황은 2024. 8. 현황으로 기준으로 추정.
- 지원규모

지원내용	산출내역	비고
고령군민 외 이용자 이용료 환급	월 7,000명 × 10개월 × 3,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환급료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증 감	-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액군비)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가족행복과 지방행정주사보 신지민 (054-950-6343)

의견제출서

조 례 명 :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전

관련조문	의견	비고
년간회원변경 및 일일이용료 인상	1.관외주민 연간회원비(찬성) 2.고령군민 2천원 3.관외주민 5천원권 1)숙박영수증 첨부시 무료입장 2)3천원 내고장상등권 지급	
고령군민 기준강화	찬성	
연중 연간회원 주소지 점검	찬성	
연간회원 취소 반환기준	찬성	
재입장 이용료 납부	협회입장: 조례이 명시하는 것보다 협회가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 (협회도 자율성 확보) 부정입장 양산으로 갈등어상 새벽반 낮 일레회때 분제 어느 시·군도 재입장 통제 없음	

기타의견
<p>◆구장 운영 시간</p> <p>1.하절기(6월~8월) 06:00시~19시 30분까지(휴게시간13:00~15:00) 관외주민 입장시간 08시부터~</p> <p>2.그외 절기 : 06:00시~18:00까지(휴게시간13:00~14:00) 관외주민 입장 시간 09시부터~</p> <p>◆예약관련의견 : 대가야구장 현행대로/디산구장 오전,오후 각80명 예약제(평일,주말)</p>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15일

의견제출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7

연락처 : 010-3504-0651

성명(단체명및 대표자) : 고령군파크골프협회장 김광식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시행일: 2024. 9. 27.] 제33조의3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가족행복과	
연 락 처	(054) 950 - 6052